



환경인허가 통합
사업장 합리적 관리
적정 환경관리기법 적용
전문기술지원

환경오염 물질저감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기술의 발전
산업활동의 경쟁력 제고

환경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통합환경관리” 왜 필요한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 05 국내 환경관리 성과와 과제
- 06 외국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노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08 정부3.0에 의한 통합환경관리제도
- 09 우리나라 환경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

- 11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 12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 13 통합환경관리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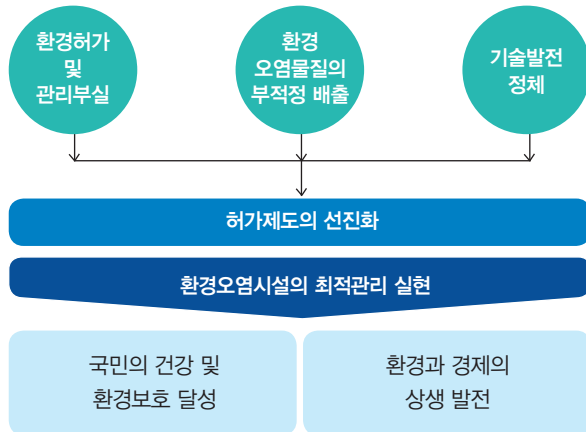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

용어 해설



I. “통합환경관리” 왜 필요한가?

산업 환경은 급변,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환경관리제도 지속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허가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검토로 진행되고, 획일적 기준적용과 신기술 불허관행으로 인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신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허가갱신제도 등의 선진적인 환경규제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 1997년 OECD 환경성과평가 이후, 한국의 진전을 검토하고 국내 목표 및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

① 매체별 중복 허가

대부분의 사업장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에서 최대 10개 분야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동일한 서류를 중복 작성하여 허가기관별로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과다합니다.

* 1·2종 사업장의 100%가 중복허가대상(경기도 194개소 조사결과)

〈시화공단 ○○폐기물업체 인허가 현황〉

지정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승인	폐기물(4개)		대기(3개)			악취 배출 시설 신고	수질 폐수 배출 시설 허가/신고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승인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	비산 먼지 배출 신고			VOCs 배출 시설 신고
환경청	안산시	환경청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경기도

②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적용

일률적인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는 규제 부담에 비해 환경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업종특성과 상관없는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 도금공장, 염색공장, 두부공장의 COD 기준은 70ppm(가 지역)으로 동일

구분	적용업종(시설)	배출 농도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수질	두부공장(COD)	200ppm	70ppm
	도금공장(COD)	3,500ppm	
	염색공장(COD)	500ppm	
대기	모든 시설 (소각, 응용, 도장 등)	Cu, Ni, Zn, HCN, 벤젠, 페놀, 포름알데히드	물질별 (2~10ppm)

③ 기술정보 및 전문성 부재

현행 환경 인허가는 공무원이 전문가의 검토지원 없이 오염물질 규명, 기술선정 등 복잡한 전문기술사항을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개시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이 “즉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허가 여부의 기술적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 1인당 처리 허가건수 연간 95건, 평균 2.5일 소요

환경허가는 시설설치 이전의 사전적·이론적 허가로서 허가 신청 시 누락, 전문기술검토의 부재 등으로 “허가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허가사항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미인지 물질을 배출하는 선의의 범법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폐수 중 무허가·미신고
유해물질 발견비율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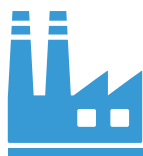
(특정수질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12.8~'13.1)



배기가스 중 무허가·미신고
유해물질 발견비율

50%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13.3)



방지시설 관리미흡 등
부적정 운영

9건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13.3)

④ 영구 허가 체계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 효과가 무기한 유지되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기술·공정변화를 고려한 신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노후화 및 적정 처리효율 준수가능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없어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예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원료 및 공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부재〉

업체명	배출 물질	배출원인	농도	폐수량	조치 결과
A제련소	셀레늄	원료 변경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변경한 원료에 함유된 성분 배출	0.4ppm (기준 0.01)	수질 2중 (920m³/일)	개선 명령
B섬유	페놀	공정 추가 *세정공정에 페놀 함유 세정액 사용	0.311ppm (기준 0.005)	수질 1중 (1,007m³/일)	사용 중지 (고발)

대기배출허용 수준이 5년 단위로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없어 과거(70~90년대)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이 계속 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⑤ 오염물질 배출구(end of pipe) 관리의 한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비산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배출량이 61.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배출구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업종(예)	비산 배출율 (B/C)	대기배출량(kg)		
		합계 (C=A+B)	점배출량 (A)	비산배출량 (B)
화학물질 배출량	61.3%	49,883	19,283	30,600

II.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국내 환경관리 성과와 과제

① 환경정책의 태동(60~70년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등 급격한 공업화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섬유, 의류 제조업 등과 함께 철강·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울산·온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제정('77. 12. 31)하여 환경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환경정책의 형성(80~90년대)

1980년에는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하였고, 환경보전을 전담하는 환경청을 발족하였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동시에 자동차 배기가스, 도시지역의 하수, 쓰레기, 녹지와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사회 내에서의 소비와 자원 이용에 따른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③ 환경정책의 발전(90~현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대기질의 악화, 수자원 공급원의 감소,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자연생태계 훼손, 나아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등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행정 및 법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환경청이 환경처('90.1)를 거쳐 환경부('94.12)로 승격되었습니다. 분야별 환경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전법」은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기존의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환경관리를 위한 법률은 총 4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해방지법 제정 (1963.11)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에 따른 환경오염 대응 · '69년 시행령 제정(오염물질: 공해, 허가성격: '신고')
공해방지법 개정 (1971.1)	· '60년대 후반,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배출시설 개념 도입, 허가제 실시,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보전법 제정 (1977.12)	· '60~'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본격화 · 특정유해물질 지정, 환경기준 설정, 배출부과금 도입 · 매체 구분 없이 55개 오염물질 지정
복수법 체계로 개편 (1990.8)	· 환경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오염분야별 대책법 제정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분법 · 매체별 관리체계로 전환: 오염물질별 허가 또는 신고



현재의 오염원 관리는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환경질 개선 및 환경기술 발전과 관련시장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산업계, 국민,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시대에 맞는 환경허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환경안전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최적가용 기법(BAT)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아가 산업활동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노력

EU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별 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특정 산업행위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매체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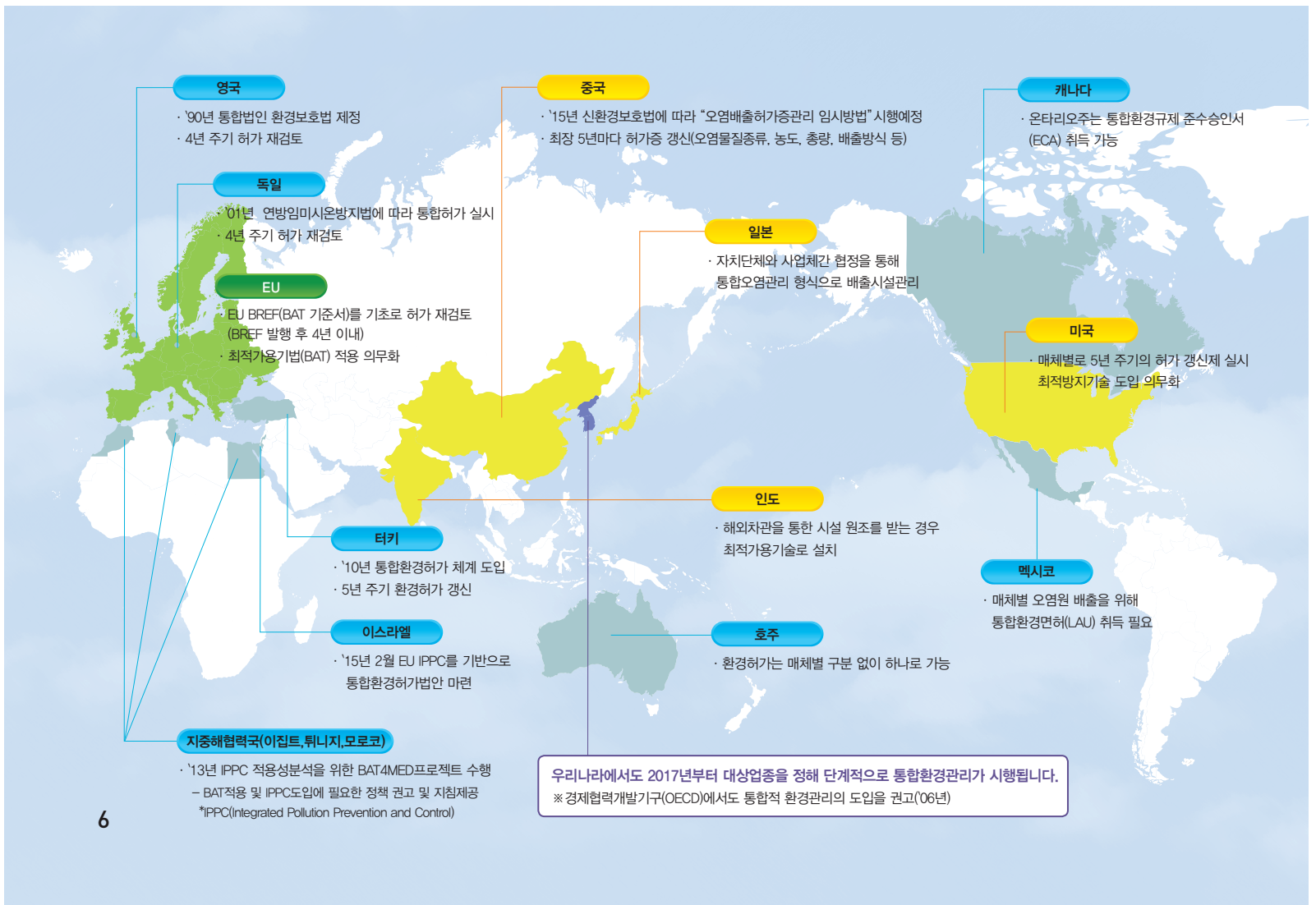
핵심은 배출시설의 통합환경관리와 최적가용기법(BAT)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허가제도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체간 이동 및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오염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을 전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기, 물 그리고 토양으로의 배출을 통제하는 한편,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화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적가용기법의 이행은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로 “허가조건은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기술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역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관련분야에 있어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합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 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선진형 환경관리방식입니다.



EU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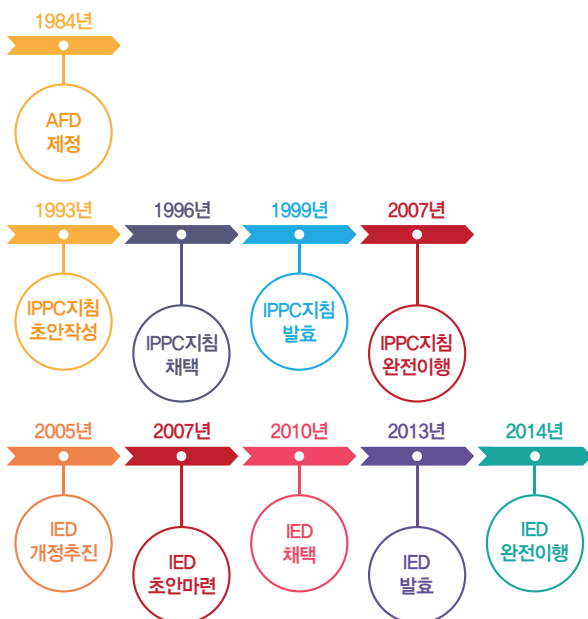
1980년대 _ 1984년 EU는 대기기본지침(Air Framework Directive, AFD)을 제정하고 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한 통합적 오염물질 관리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지침을 통해 허가를 원하는 기업은 “적정비용의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BATNEEC)을 사용하도록 하여, 최적 가용기법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990년대 _ 1996년 EU는 통합환경관리(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지침을 채택하여 최적가용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관리와 통합허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EU는 모든 회원국들이 1999년 10월까지 IPPC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10월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대 _ 2010년 EU는 EU IPPC 지침 개정(2008)과 2007년 까지 이행된 결과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통합관리 지침인 산업 배출지침(IED :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을 채택하고 2013년 1월 발효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완전 이행(국내법화)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IED 적용은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2015년, 대형연소시설 등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IED의 도입

2005년 11월, 유럽위원회(EC, EU Commission)는 환경 편익을 명확히 하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술발전을 권장 하기 위해 산업계 배출물질에 대한 유럽 차원의 법률 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 산업계, NGO 등으로 'IPPC 검토자문 그룹(Review Advisory Group)'을 구성하여 IPPC 지침의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법령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IED를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 6월, 회원국들은 제안서의 최종안에 합의하였으며, 새 지침은 2011년 1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회원국들은 2013년 1월 7일까지 IED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2014년 1월 7일 기존 IPPC 지침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IED의 특징

IED는 IPPC 지침과 TiO₂, 폐기물 소각 등 7개 분야 지침을 재구성한 것으로, 그 목적은 유럽연합 전체의 다양한 산업활동 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즉 산업배출을 줄이고 최소화 시킴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IED 허가 원칙〉

- ① 통합적 접근 : 허가시 공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활동과 성능 고려
- ②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 BAT를 기준으로 배출한계치 (ELVs)를 포함한 허가조건을 설정하고, 4년 주기로 개정
- ③ 유연성(flexibility) : 허가권자에게 특정사안에 있어서 덜 엄격한 배출한계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④ 점검(inspections) : 환경점검을 의무적인 요건으로 규정 (매 1~3년에 한번 현장조사)
- ⑤ 공공 참여 : 허가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보장

Ⅲ.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정부 3.0에 의한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도 튼튼, 경제도 튼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장 관리의 기초,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문기관과 학계의 연구, 산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지역별·산업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정부내 관계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환경관리방식입니다.

사업장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합리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제도입니다.

또한, 업종별·시설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제도입니다.

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환경관리제도

배출시설 최적운전기법, 오염물질 배출저감기법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환경기술과 기법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수질, 대기 등의 환경매체를 통합관리합니다.

② 환경분야별 인·허가 과정 통합으로 절차의 간소화

현행 6개 법령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총체적인 환경 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합니다.

※ (10개 인허가)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비산배출시설, VOC 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악취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③ 산업계, 전문가,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제도

산업계, 전문가,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최적 가용기법의 범위, 수준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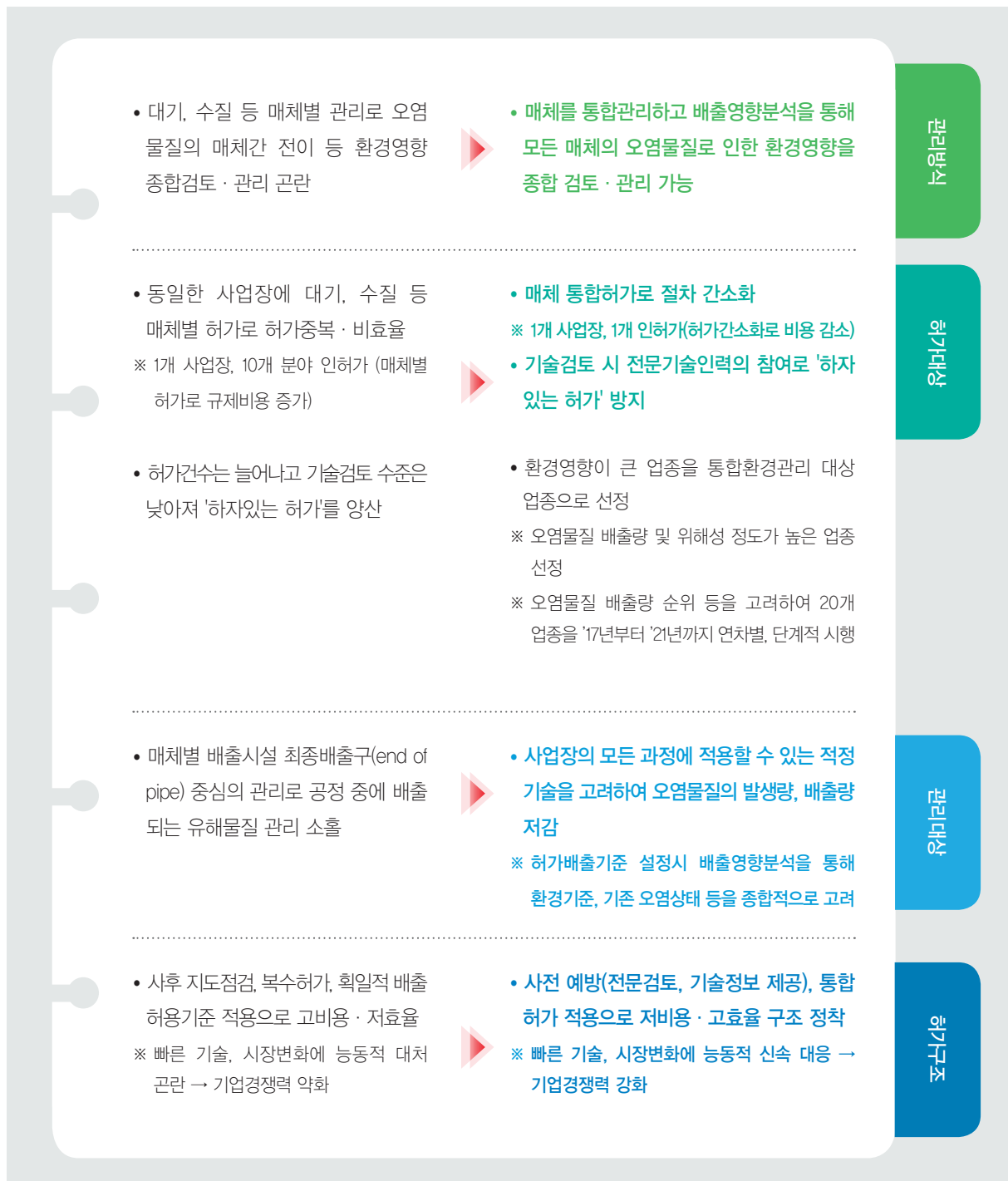
④ 산업현장의 맞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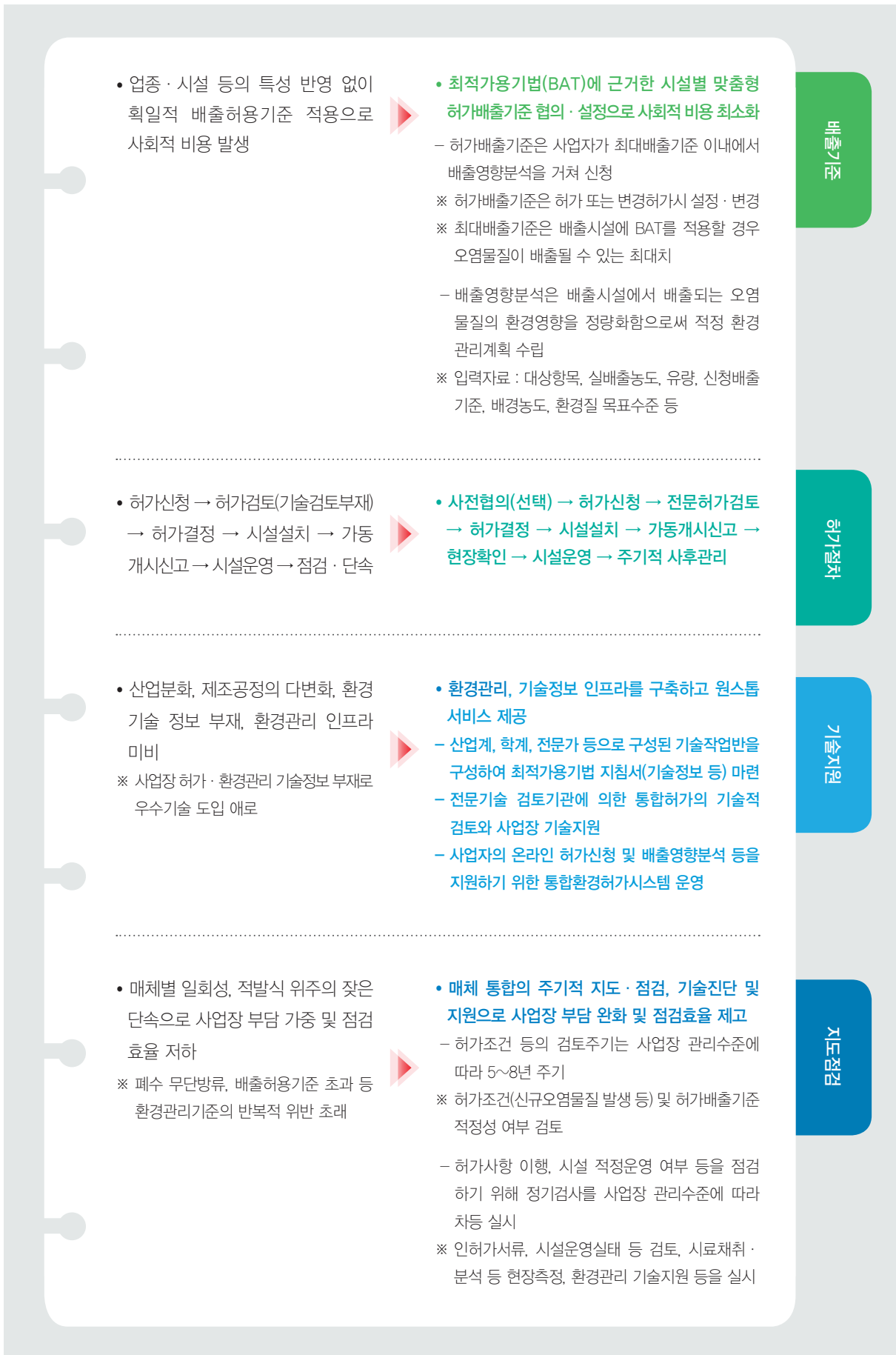
기존의 획일적으로 설정되었던 배출기준을 개선하여 업종별·시설별 특성에 따른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환경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환경질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IV.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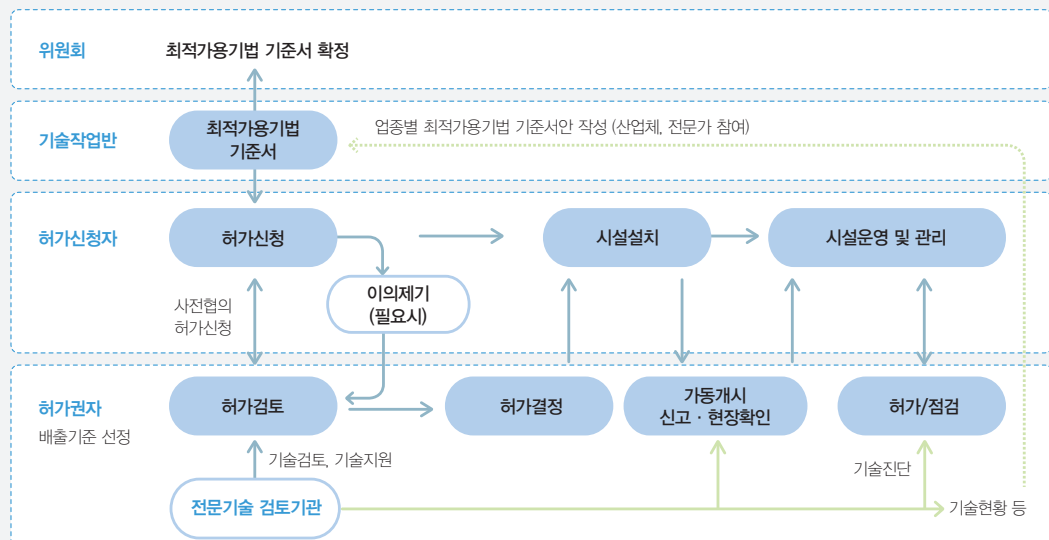
추진 경위

- ’13. 2 국정과제 선정
- ’13. 6 ~ ’13. 12 통합환경관리제도안 마련
- ’13. 12 ~ ’14. 1 관계부처협의
- ’14. 1 입법예고
- ’14. 6 ~ ’14. 9 통합법 협의체 구성·운영
- ’14. 9 재입법 예고
- ’14. 12. 31 국회제출
- ’15. 7. 1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구성 및 체계 총칙 등 총 6장(章), 47개 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통합관리사업장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7개 관계 법률을 적용합니다.



통합허가 절차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제5조 사전협의

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계획,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대하여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통합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수질 1, 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 배출영향분석 결과 등을 포함)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오염물질등을 배출시 허가배출기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경우 검토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가동개시 신고→ 현장확인→ 신고·수리→ 시운전' 의 가동 개시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시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

제13조 오염도 측정

시운전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이하 배출 여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 외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4조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사업장은 통합법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환경관리체계 구축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연간 보고서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 기술인프라 구축

제24조 최적가용기법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 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보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

제25조 실태조사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정보공개

사전협의 검토결과 및 허가 또는 변경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공개하는 정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공개를 안하거나 공개의 범위 제한 가능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전문성 강화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합니다.

제29조 전문기술심사원의 운영

사전협의 신청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 기관을 운영합니다.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일?

대기업 외의 기업에는 <첨단설비> 도입에 부담?

진실 대규모 사업장 (1·2종) 대상! '17~'21년 연차별 확대시행

기존사업장 4년 유예와 함께 충분한 협의 및 기술지원 포함
최적비용기법 선정에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최고·최상 기술만 사용?

최고·최상 기술의 적용으로 첨단설비 도입 의무화?

진실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적기법 사용!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 (법률안 제24조)

개별법과 이중규제?

통합법 제정 이후에도 수질법, 대기법 등 기존법 존재, 중복규제

진실 의무 중복 부과 불가!

통합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법률안 제4조)

규제강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

진실 비과학적 규제부담 해소!

배출기준 초과판정 기준으로 최고치 대신 통계치 적용, 적발식 지도·점검을 기술진단 중심으로 전환

새로운 제도에 맞춘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 서류/절차가 복잡?

진실 10개로 중복·분산된 인허가를 통합, 간소화

매체별 인허가를 통합관리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V.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실질적 오염감소로 환경복지 기반 마련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환경보건 등 편익이 발생 (B/C=2.37)하고, BAT 적용과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분야별 환경사고 발생현황조사 (영국 환경청, '06)〉
사업장 통합관리로 산업분야 환경 오염사고 발생건수 급감
 - '00년 884건 → '06년 464건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

〈'01~'06 IPPC 도입 효과 분석 (영국 환경청, '07)〉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환경개선 효과 창출
 - (대기) 납, 황산화물 50% 수준 감소('00~'06)
 - (수질) 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획기적 개선
 - (폐기물) 발생 25% 감소, 재활용 50% 증가('98~'02)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고, 책임 강화

인허가 통합으로 허가비용 감소,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과 통계치 기준의 통합 지도·점검으로 기업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는 실효성있는 규제입니다.

〈통합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환경부, '14)〉
중복서류 간소화(73종 → 1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정기점검을 현실화하고 정밀진단 방식으로 전환
 - 기업의 연간 규제부담 82억원 절감

〈통합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변화조사(EC위원회, '07)〉
정부와 사업장(52천여개)에서 허가 간소화, 시설점검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저감효과 발생
 - 행정비용으로 연간 약 105~255백만 유로 절감 추정



과학기술에 기반한 똑똑한 규제로 기술혁신 및 경제 활성화 기여

BAT의 적용과 사업장의 체계적 환경관리로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01~'09 기술혁신 사례조사(J. Fresner 등, '10)〉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투입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0년간 EU의 섬유제조업, 금속표면처리업 등에서 통합 환경관리 적용결과 용수 30~90%, 보조자재 30~50%, 에너지 15~25% 절감
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투자비용 1년 이내 회수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연간 3,300 억원의 기업투자 증대,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13, 제3차 무역 투자진흥회의)

용어해설(Glossary)

용어	해설
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배출영향분석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산업배출지침 (IED :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배출오염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그 간 운영했던 통합환경관리제도(IPPC, 2008/1/EC), 대형소각로(발전소 포함) 오염관리제도(2001/80/EC), 폐기물소각 오염관리제도(2000/76/EC), 용매 오염관리제도(1999/13/EC), 그 외 이산화탄산 생산에 따른 오염관리제도 3가지 등 7개 배출시설 법령을 통합·개선한 EU지침
전문기술심사원	통합허가 사전협의 및 기술검토, 가동개시 신고 현장확인, 사업장 기술지원 등 통합환경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기관
최대배출기준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 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 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법률안 제24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 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통합환경관리 지침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Directive)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96년 제정한 EU 지침으로, 배출시설 운영자 관리원칙, 신규 및 기존 시설허가요건, 최적가용기법(BAT)과 환경기준, 허가조건 준수여부, 정보제공과 공공의 참여 등 IPPC 실행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칙(Annex)으로 통합 환경허가대상 산업과 규모, 여타 EU 지침서와의 관계, 배출한계치 결정시의 고려대상 주요 오염물질, BAT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법률안 제6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 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법률안 제28조)
허가배출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법률안 제8조)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환경복지

환경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환경사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중복규제 개선 및 사업장 관리의 합리화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입니다.



이 발행물은 국민들에게 환경정책을 알리고 정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홍보물입니다.
©2015 Copyrights Ministry of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